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자 료</h1> <h2>1월 13일 (목) 조간 (1:12 12:00 보도)</h2>	
배 포 일	2022.1.12 / (총 4 매)	담당부서	장애인자립기반과
과 장	신 재 형	전 화	044-202-3320
담 당 자	권 오 경		044-202-3321

##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.5% 인상

- 기초급여액 (2021년) 300,000원 → (2022년) 307,500원으로 인상-

-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, 부부가구 195.2만 원(전년동) -

-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(30만 원) 대비 7,500원 인상된 307,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, 약 27만 6,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(월 최대 8만 원)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,500원\*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.

\* (장애인연금 급여) 기초급여(307,500원) + 부가급여(20,000~80,000원)로 구성

-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\* 중 소득 하위 70%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,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.

\* (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

-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\*되었으며, 올해부터는 「장애인연금법」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\*\*을 반영(2.5%)하여 인상액이 결정되었다.

\* ('19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→('20) 교육·주거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→('21) 전체

\*\* (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) 2014년~2020년: 0.4%~1.9% → 2021년: 2.5%

□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\*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,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, 부부가구 기준 195.2만 원이다.

\* (선정기준액) 소득·재산, 생활실태,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(제4조)으로 소득 하위 70%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

○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.6%(37만 1,413명, '21년 기준)로 70% 수준을 상회하였으며, 올해에도 수급률이 70%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“올해 장애인연급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%대에 진입하였다”라고 밝히며, “장애인연급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.”라고 밝혔다.

< 붙임 > 장애인연금 사업개요,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

**붙임**

**장애인연금 사업개요,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**

**1 사업개요**

- (사업목적)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
- (대상자) 만 18세 이상 「장애인연금법」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% 수준 이하
- (지원급여)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

(2022년 기준)

구 분	18~64세			65세 이상		
	기초급여	부가급여	합계	기초급여	부가급여	합계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재가)	30.75만 원	8만 원	38.75만 원	기초연금 으로 전환	38.75만 원*	38.75만 원
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30.75만 원	7만 원	37.75만 원		7만 원	7만 원
차상위 초과	30.75만 원	2만 원	32.75만 원		4만 원	4만 원

※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,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

\*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전체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

- (예산) 2022년 예산은 1조 2,420억 원(국비 67%+지방비 33%)\*

\* 국비 기준: ('19) 7,197억 원 → ('20) 7,861억 원 → ('21) 8,291억 원 → ('22) 8,326억 원

- (수급자 현황) 수급자수는 37만 1,413명('21년), 수급률은 71.6%

## ② 선정기준 [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70% 수준]

- (선정기준액)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%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,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·재산 수준과 생활실태, 임금·지가·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

### < 장애인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>

연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단독가구	121만 원	122만 원	122만 원	122만 원	122만 원
부부가구	193.6만 원	195.2만 원	195.2만 원	195.2만 원	195.2만 원

## ③ 신청방법

-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·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, 온라인 신청\*도 가능함
  - \* 복지로(<http://www.bokjiro.go.kr>)
- 2022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
  - \* 만 18세 생일이 2022년 5월인 분은, 2022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고, 5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